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보균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신문고를 관리·운영하고 예술인신문고
신고사건의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조사
진행을 도모함

3. 주요내용

가.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신설

- 1) 예술인신문고의 관리·운영 업무(안 제19조제3호 신설)
- 2)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·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조사지원
업무(안 제19조제4호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예술인권리영향평가”를 “예술인권리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19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의 관리·운영

4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
성희롱·성폭력행위 신고사건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
요청하는 사항의 확인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예술인권리영향평가) ① ~ ③ (생 략)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지침의 수립 또는 변 경,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 술인 권리보호 시책 마련에 필 요한 경우 <u>예술인권리영향평가</u> 를 실시한 국가기관등 및 예술 지원기관에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	제4조(예술인권리영향평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술인권리영향평가</u> ----- ----- -----.
제19조(업무의 위탁)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예 술인 복지법」 제8조제1항에 따 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 한다.	제19조(업무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1. 2. (현행과 같음) 3.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예술 <u>인신문고의 관리·운영</u> 4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 <u>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</u> <u>관련 성희롱·성폭력행위 신고</u> <u>사건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</u> <u>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</u>

	의 확인
--	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	
연 락 처	(044) 203 - 2728